의 안 번 호	2433	【2024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】 **검 토 보 고 서**

1. 검토경과

○ 제 출 일 : 2025. 5. 30.(금)
○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○ 예비심사 : 2025. 6. 12.(목),행정자치위원회
○ 회 부 일 : 2025. 6. 18.(수)
○ 심 사 일 : 2025. 6. 20.(금)

2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및 「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8조에 따라 2024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보고서를 심의·의결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2024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조성 총괄

(단위: 원)

전년도말 조성액Ⓐ	당 해 연 도 증 감 액			당해연도말 조성액 Ⓔ=Ⓐ+Ⓓ
	계 Ⓓ=Ⓑ-Ⓒ	조 성 액Ⓑ	사 용 액Ⓒ	
8,595,330,960	4,334,172,740	4,334,172,740	0	12,929,503,700

4. 근거법규

○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
○ 「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8조

5. 검토의견: 없음

근 거 법 규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 구청장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,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29>

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29.>